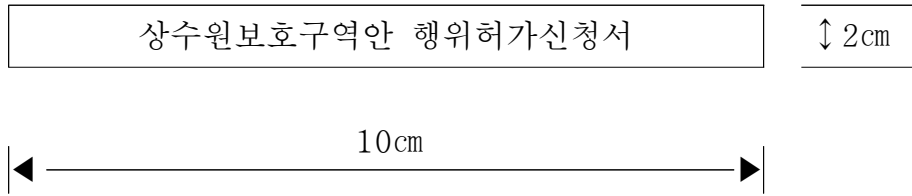


[별표2] <개정 2001.11.8>

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신청표시인(제10조 관련)



- 비고: 1. 위 표시인은 해당 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.
2.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
3. 위 표시인은 시·군·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.